

# Chubb 이지(E.G.)배상책임보험 II

CHUBB®



## 이지(E.G.) 배상책임 II 보험은?

-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산업과 업종이 가입 가능
- 특정 도급/하도급 현장만을 보장하기 위한 개별 계약 및 연간 계약 체결 가능
- 하나의 증권으로 근재보험 약관에 다양한 배상책임 담보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담보 가능  
(단, 근재를 기본으로 1개 이상의 담보를 추가하여야 합니다.)

## 가입대상

건설회사, 제조업자, 공장 등 고용 계약에 의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산업군의 사업장

## 보험가입시 필요서류

- 가입설문서 및 사업자등록증
- 직전 회계연도의 손익계선서 및 공사(제조)원가명세서
- 공사계약서 및 노무비내역서

## 주요 보상하는 손해

-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사용자 배상 책임
- 영업배상, 생산물배상, 가스배상,
- 체육시설배상 중 선택 담보
- 손해경감비용 (사고 발생 후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비용)
- 방어비용(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, 변호사비, 중재,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)

\*인수기준 : 근재보험 인수 기준을 우선으로 적용하고 선택 담보에 따른 각 상품의 인수 기준 적용

## 처브그룹 소개

처브그룹은 세계 보험업계를 선도하는 보험사입니다. 전세계 54개국에서 재물보험, 특종보험, 개인상해보험, 건강보험, 재보험 및 생명보험을 다양한 기업 및 개인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 언더라이팅 중심 기업인 처브그룹은 보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원칙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평가 및 관리하고,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처리, 지급하고 있습니다. 풍부한 보험 전문지식과 장인정신으로 처브그룹은 개인, 가족,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 다양한 고객층에게 최상의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또한 처브그룹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, 광범위한 판매 채널, 탁월한 재무 건전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. 처브그룹은 다국적 기업 및 중소기업 고객을 위한 재물보험, 특종 보험, 리스크 관리 서비스, 고액자산보유 고객을 위한 자산보호 목적의 보장성보험, 개인 고객을 위한 생명보험, 상해보험, 건강보험, 주택종합보험 및 특화보험 그리고 단체상해 보험, 단체생명보험 및 재보험 상품을 제공합니다.

미화 1,957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, 2022년 기준 미화 468억 달러의 총 수입 보험료를 달성한 처브그룹의 주요 보험 계열사들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의 기업재무 능력 AA 등급을, AM Best의 A ++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
처브그룹의 모기업인 처브리미티드(Chubb Limited)는 뉴욕증권거래소(NYSE: CB)에 상장되어 있으며, S&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

처브그룹은 취리히, 뉴욕, 런던, 파리 및 기타 주요 도시에 사업본부가 있으며, 전 세계 약 34,000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.

## Contact Us

라이나손해보험  
(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),  
처브그룹 컴퍼니  
03156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 
라이나타워 14, 15층  
대표번호: +82 2 2127 2400  
대표팩스: +82 2 6913 8498  
[www.chubb.com/kr](http://www.chubb.com/kr)

라이나손해보험은 처브그룹 컴퍼니인  
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브랜드명으로,  
라이나생명과 독립된 계열회사입니다.

특종보험부  
Casualty Division  
O +82 2 6711 5791  
E [casualty.kr@chubb.com](mailto:casualty.kr@chubb.com)

**Chubb. Insured.<sup>SM</sup>**

## 알아두실 사항

###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와 의무

#### 계약전 알릴 의무

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(질문서를 포함합니다)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.

#### 계약후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

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의 사항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 그러지 않을 경우,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#### [예시]

1. 보험 목적물을 양도하거나,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
2.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(예: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,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)

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####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

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, 보험기간, 보험료,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(약관)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청약의 철회

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6조, 동법 시행령 제37조,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(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)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.

다만,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

#### [일반금융소비자]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 소비자를 말합니다

[전문금융소비자]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,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 상품에 따른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, 구체적인 범위는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#### 계약의 취소

보험계약자는 청약시 약관과 청약서 부분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,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.

#### • 계약취소 신청주소: (031)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

라이너타워 14, 15층

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

(전화: 02)2177-2400)

#### • 가까운 영업점 위치: (031)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

라이너타워 14, 15층

(고객서비스센터)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

주식회사(전화: 02)2177-2400)

### 보험금 지급 사유의 통지

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.

### 보험금의 지급 및 지급 제한

#### 보험금의 지급

보험자는 지급보험금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손해를 통지 받고 보상할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상황 하에서 지급 할 수 있는 최저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보상책임이 확정되지 않거나 피보험자의 관리영역 내에 있는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보험금 지급을 중지합니다.

#### A. 보험자에게 필요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

#### B.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의 조사 또는 형법에 의한 짐문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 중인 경우

#### 보험금의 지급 제한

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일반 면책사항(이 일반 면책은 증권의 전부문에 적용됩니다),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나 고의적 태만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 계약의 해제·해지에 관한 사항(해지환급금 안내)

#### 계약의 해지사항

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#### 1.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의자(보험금을 받는 자)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

#### 2.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의자(보험금을 받는 자)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

#### 3. 계약자,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

#### 4.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

#### 계약의 해지 사항

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,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, 다른 악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됩니다.(상법 제650조 제1항).

보험계약이 효력상실,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려나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는 돌려드려지지 않습니다.

-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수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 단위로 계산한 보험료

-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수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

###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

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돌려 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

### 예금자보호 안내

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야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 자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「5천만 원까지」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「5천만 원까지」 보호됩니다. 다만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
###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 안내

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시 고객서비스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,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#### • 회사 전화번호: 1566-5800 (고객서비스센터)

인터넷 주소: www.chubb.com.kr

#### •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

(www.fs.or.kr/국번 없이 1332)/

우)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

###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

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 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, 보장내용(면책기간 재적용 등)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###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

계약자는 보험사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(적합성 원칙) 제3항, 제18조(적정성 원칙) 제2항, 제19조(설명의무) 제1항 및 제3항, 제20조(불공정 영업 행위금지) 제1항 또는 제21조(부당 권유 행위)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, 동법 제47조(위법 계약의 해지 제한),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 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,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이때 계약자는 해지 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(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)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다만, 법률에 따라 가입 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